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 사항 추가 등 〉
■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56호)

2026. 7.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총괄: 제10장의2 신설 관련 검토	3
2. 주요 내용별 검토	7
(1) 기후금융 정의 신설 등(안 제2조 및 제58조)	7
(2)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74조의2·제74조의3)	10
(3) 공공금융지원(안 제74조의4)	16
(4) 금융회사의 책무 등(안 제74조의5)	19
(5) 채권발행(안 제74조의6)	21
(6) 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안 제74조의7)	24
(7) 기타 내용(안 제74조의8·제74조의9)	26
(8) 부칙	28
3. 舊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3차 소위 의결사항(2026.3.)	30

※ 참고자료1: 녹색금융과 기후금융의 관계	39
※ 참고자료2: 한국형 녹색채권 관련 자료	40
※ 참고자료3: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개요	41

I. 제안경위

2026년 2월 26일 김소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약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 안보 위협, 거주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 각국은 5년마다 상향된 자발적 감축기여 목표 제시 및 2050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중임.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현행법 제58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정책과 기후금융을 함께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음. 우리나라도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이에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려고 함(안 제2조, 제58조, 제10장의2 신설).

III. 검토의견

1. 총괄: 제10장의2 신설 관련 검토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기후금융”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면서,

제10장의2를 신설하여 금융위원회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공공금융 기관이 기후금융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 기후금융의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음.

이는 파리협정¹⁾에 따라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각국이 NDC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전세계적 기조와, 국내적으로도 점차 심화되는 기후변화²⁾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10장의2를 신설하여 기후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금융 촉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1)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당사자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자발적으로 정하고 투명성을 바탕으로 각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비준.

2) 최근 30년(1991년~2020년) 연평균기온은 과거(1912년~1940년)에 비해 1.6℃ 상승하였고, 여름길이는 20일 증가, 겨울 길이는 22일 감소하였음. 또한, 최근 폭염 및 호우 등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체감이 증가하고 있음. 2022년 초강력 태풍인 ‘힌남노’로 강수량 기록이 경시되었고, 여름철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기록적이었던 2018년에 이어 2024년에도 8월말 기준 평균폭염일수는 평년보다 13.4일 많은 24.0일로 역대 3위를 기록하였음.

민간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 제10장의2 체계]

조문	내용
제74조의2(기본계획)	-금융위원회는 5년마다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 수립
제74조의3(기후금융 촉진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금융 촉진위원회 및 전담기관 설치
제74조의4(공공금융지원)	-공공금융의 기후금융 활동에의 자금 우선공급 및 우선보증
제75조의5(금융회사의 책무 등)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촉진 금융상품 개발 등 의무 부여
제75조의6(채권발행)	-정부·지자체·금융회사 등의 기후금융 자금공급을 위한 채권발행 근거 마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면제
제75조의7(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분류체계 적용 특례 부여 등
제75조의8(자료제출 등의 요구)	-금융위원회에 기후금융 촉진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부여
제75조의9(국회 보고)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반의 제도·정책에 관한 이념·기본방침·원칙을 정하는 이른바 ‘기본법’인 반면, 개정안은 기후금융 촉진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촉진위원회의 설치, 공공금융지원, 금융회사의 책무, 채권 발행 등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를 포함한 정책 시행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본법은 자기완결적 규율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를 제시하는 방침적·비완결적³⁾이며 부처횡단적인

3) 기본법이 내세우고 있는 이념, 가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상·재정상 조치가 별도의 법령에서 규정되는 방식을 의미함. 별도의 법령인 실시법(기본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기본법에 규정된 방침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후속법률을 의미)에 관한 규정이 없는 자기완결적 내용을 가지는 기본법도 있으나(가령,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 이는 예외적인 경우임.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⁴⁾, 한국법제연구원⁵⁾에서도 기본법은 ① 국가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② 해당 분야의 제도·정책의 전체상을 제시하여 이를 종합화·체계화하며, ③ 장기적·종합적인 시야에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금융지원 방식이나 금융기관의 역할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기본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적 측면에서 다소 어색하게 보일 수 있으며⁶⁾, 별도의 개별 법률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방식⁷⁾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 제58조에 따라 현재 정무위원회에 「기후위기 대응을

4) 김현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성질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9집 제2호, 439-518p, 2010.2., 492면.

5)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10.31.

6) 아울러 향후 기후금융 촉진에 관한 정책수단은 기본법에 규정되는 반면,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실증 규제특례 등 다른 기후위기 대응 정책수단은 개별 법률에서 규율되는 구조가 될 경우, 동일한 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서로 다른 입법체계에 분산되어 규정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정책수단의 규율 체계가 기본법과 개별법으로 혼재될 경우 관련 법체계의 일관성과 정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현행법 제34조 및 제58조에서도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4조(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 ① 정부는 국가비전과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하여 이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이하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이라 한다)의 개발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⁸⁾이 계류되어 있는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법은 각 분야의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정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의 법률이므로, 개별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둘째,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무부처로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안은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의 설치, 금융회사 관련 의무 부과 등 기후금융 정책의 주요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수행 주체를 대부분 금융위원회로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기본법의 체계 내에서 특정 부처의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규율하면서 그 정책 추진 주체를 주무부처가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단독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소관 체계와 정책 집행 구조 간의 정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8) 의안번호 제2202155호,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2. 주요 내용별 검토

(1) 기후금융 정의 신설 등(안 제2조 및 제58조)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인 기후금융과 금융회사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기후금융 촉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기후금융 시책 협조 책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8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7. (현행과 같음) 18. “기후금융”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다음 각 목의 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상의 경제활동 나.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관련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u>채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u>	<u>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탄소 다배출 산업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탄소 전환 활동</u> <u>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u> 19. “금융회사”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 ----- ----- -----<u>기후금융 촉진에 필요한 채원</u>----- ----- ----- ----- -----. ② 공공기관은 기후금융 촉진 등을 위한 제1항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안 제2조와 관련하여, 개정안이 제10장의2를 신설하며 기후금융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의 책무와 금융회사의 녹색채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후금융”과

“금융회사” 정의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다만, 탈탄소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금융활동으로 이미 금융권 등 민간에서도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이 빈번히 활용되고 있으므로 현실 수용성이 높은 용어를 법률로 각각 나누어 정의할 필요⁹⁾도 있어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수용하더라도, ‘기후금융’을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각각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의 내용]

구분	활용도	내용
녹색금융	‘20년 범부처 녹색금융 추진 TF운영 단계부터 활용	-녹색분류체계에서 정의한 경제활동 등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 분야 활동 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전환금융	‘21년부터 민간에서 필요성 제기, 이후 2026년 2월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발표(금융위 주관)	-녹색분류체계 및 정부가 수립한 전환경로 등에 기초한 저탄소 전환활동 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안 제58조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기후금융 촉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고 있는데,

앞서 논의한 바대로 현행법이 가진 기본법적 성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무부처로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체계를 가진 기본법 내에 기후금융 분야에서만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정책 추진 체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정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이후 기후금융에 대해 규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임.

(2)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74조의2·제74조의3)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의 심의와 기후금융에 관한 의견 조정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10장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u> <u>제74조의2(기본계획) ① 금융위원회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기후금융의 기본방향과 목표</u> <u>2.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u> <u>3. 기후금융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개선</u> <u>4.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u>

현행	개정안
<신설>	5. 그 밖에 기후금융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74조의3에 따른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3(기후금융 촉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후금융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3. 그 밖에 기후금융 촉진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촉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촉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1.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기후금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촉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촉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후금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내에 전담조직을 둔다. ⑦ 그 밖에 촉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72조의2는 현행법 제10조¹⁰⁾에 따라 녹색금융의 활성화 및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의 시책을 포함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기본계획과 기본계획 간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법상 국가기본계획에서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바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안 제72조의3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촉진위원회를 두면서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기후금융에 관한 부처 간 조정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데, 촉진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내용이 대부분 위원회와 중복¹¹⁾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의 촉진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위원회의 위상, 관계 부처의 참여 및 심의내용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촉진위원회를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원회와 개정안에 따른 촉진위원회 비교]

구분	위원회	촉진위원회
소속	대통령 소속	금융위원회 소속
정원	50인~100인	15인 이내
구성	-위원장(2인): 국무총리와 전문가 1인 -위원 (공무원)재정경제부, 과기부, 산업부, 기후부, 국토부, 기획예산처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중기부장관 및 방통위원장, 금융위원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 이하 시행령에서 규정된 위원 (민간)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 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 전문가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위원 (공무원)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부, 기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 차관 (민간)기후금융 금융 분야 전문가
심의내용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감축 이행현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후금융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그 밖에 기후금융 촉진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분	위원회	촉진위원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 •소통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책금융을 통한 녹색·전환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정책금융 지원협의회¹²⁾’를 이미 운영중이므로 촉진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며,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해 기후금융 촉진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나 하부조직 설치는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별 법률에서 하부조직(전담 지원조직)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¹³⁾을 제시한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12)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책금융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하여 2022년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출범하였으며, 금융위, 기후부,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국토부, 복지부, 해수부, 농식품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참여함.

13)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 심의 등을 심의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현재 금융위원회 내 기후금융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이 부재한 상황으로, 기후금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3) 공공금융지원(안 제74조의4)

개정안은 국책은행 및 국가 보증기관이 안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녹색분류체계상의 경제활동,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관련 분야의 활동 등 (이하 “기후금융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74조의4(공공금융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그 밖에 자금 공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우선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그 밖에 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1항의 자금 공급 및 제2항의 보증을 위하여 해당 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자금 공급 및 제2항의 보증 실적은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에 가산 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안 제74조의4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국책은행이 기후금융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국가 보증기관이 우선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금융 활동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만, 안 제74조의4제4항은 자금 공급 및 보증 실적을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에 가산항목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¹⁴⁾ 국책은행 등이 기후

14)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며, 산업·기업·수출입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됨.

금융 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나, 경영평가 실시 및 평가기준 설정 주체가 재정경제부장관이라는 점¹⁵⁾에서, 이 법률에서 기후금융 지원 실적을 경영평가 가산항목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방식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법은 각 분야의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 추진의 방향을 정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의 법으로, 공공금융 지원 등 개별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인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4) 금융회사의 책무 등(안 제74조의5)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전략·목표·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¹⁶⁾,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4조의5(금융회사의 책무 등) ①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전략·목표·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과 관련된 내부위원회 설립 및 운영, 전담 임원의 선정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을 주기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⑤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74조의5는 정부와 공공금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촉진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대한 기후금융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만, 개정안 제2조제5호에서는 금융회사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금융회사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바, 업권 및 자산규모에 따른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안 제74조의5제1항도 의무조항이 아닌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법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기후금융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책무를 현행법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16)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금감원)」 제13조에서 기후리스크 관리체계(지배구조 강화 등)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취지도 있어 보임.

(5) 채권발행(안 제74조의6)

개정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이 기후금융 활동 등에 자금을 공급할 목적으로 채권(이하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 및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채권에 대하여는 2030년 12월 31일 까지 세제 특례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6).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74조의6(채권발행)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u> <u>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 및 이자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u>③ 금융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채권과 관련한 원칙을 제정 및 공표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의 채권은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및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u>

현행	개정안
	<u>이 조항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u>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원화 녹색채권이 발행되고 있으며,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정의된 6개 환경 목표¹⁷⁾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 외부검토 및 사후보고 등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되어 자금의 사용과 관리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차이가 있음.

한국형 녹색채권은 2018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43조 6,098억원 규모로 발행¹⁸⁾되었으며, 정부에서는 녹색채권 발행을 독려하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기업에게 최대 3억원까지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¹⁹⁾을 수행하고 있음.

안 제74조의6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기후금융 활동을 위해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짐.

17)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가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채권 발행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함

18) 출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녹색채권 발행현황

19)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사업(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내역사업) 개요]

- (목적)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여 탄소중립 적기 추진에 기여
- (사업내용) 기업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을 때 납부해야 할 이자액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 발행금액의 0.2%(대기업·공공기관 등) 또는 1.0%(중소·중견기업)로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

- (2026년 예산) 8,100백만원

다만, 개정안은 녹색채권 발행에 대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 특례를 신설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 제3조제1항²⁰⁾에서 규정한 법률 외에는 별도로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상충되는바, 「법인세법」,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²¹⁾가 있음.

또한,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폭넓은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녹색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940호)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바, 이와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20)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이하 생략)

21) 이에 개정안은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를 수정하고 있으나,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실제적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관련 내용은 (8) 부칙에서 논의함.

(6) 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안 제74조의7)

개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녹색분류체계 적용 관련 특례를 부여하거나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7).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4조의7(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 정 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녹색분류 체계 적용 관련 특례를 부여하거나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²²⁾란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녹색
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자발적인 지침서로, ①6대 환경목표²³⁾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에 기여하고, ②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
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으며, ③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세부 경제
활동 총 100가지를 제시하고 있음²⁴⁾.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① 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3)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

24)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은 특정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녹색채권,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에 활용하고 있음.

안 제74조의7은 탄소배출 감축 유인이 적고 친환경기술 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개정안과 같이 녹색분류체계 특례를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이 녹색채권,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을 통한 녹색전환 자금을 보다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어 중소기업 녹색전환을 보다 가속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제공하는 지침으로써 기업규모에 따라 분류체계의 적용을 달리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그 구조상 중소기업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²⁵⁾을 제시한바, 이를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녹색분류체계 적용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5) 참고로,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포함하는 등, 중소기업을 고려한 활동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7) 기타 내용(안 제74조의8·제74조의9)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8 및 제74조의9).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4조의8(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금융위원회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기후금융 촉진 지원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74조의9(국회 보고) 금융위원회는 제74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74조의8은 금융위원회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74조의9는 금융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선 실체적인 개정안 내용의 논의 경과에 따라 보칙에 해당하는 동 개정 사항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다만, 개정 사항을 반영하더라도, 안 제74조의9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현행법 소관 기준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며, 정책 시행 주체인 금융위원회 소관 기준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부위원회인바, 소관 상임위원회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8) 부칙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안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 고려 시 타당하다고 보여짐.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에 개정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칙에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은 통상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 번호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것으로, 다른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그 사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특히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던 사항 중 일부를 해당 법률로 이관하거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부칙에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해당 법률의 실체적 내용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칙

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²⁶⁾.

안 부칙 제2조는 개정안을 통해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에 따른 규율 사항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의 범위’라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실체적인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안 부칙 제2조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에 세법이 아닌 그 외 개별법을 추가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상 타당하지 않으며, 동법 제3조는 동 법률의 핵심적이고 실체적인 사항이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재경위의 심사를 거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26)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3. 舊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3차 소위 의결사항(2026.3.)

이상의 검토를 거쳐 舊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3차 법안소위(2026.3.)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된바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김소회의원안	수정의견(2026.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기후금융”이란 기후 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 하는 금융으로, 다음 각 목의 활동에 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기술 및 환 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 에 따른 녹색분류 체계상의 경제활동 나. 녹색기술 및 녹색 산업 관련 분야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다. 철강, 조선, 석유 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탄소 다배출 산업 분야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18. “ 녹색금융 ”이란 기 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 하는 금융으로, 「 환 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10조의4 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제에서 정의한 경제활동 등 녹색산업 및 녹색산 업 분야 활동에 금 융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말한다. 19. “ 전환금융 ”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10 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 및 정부가 수립한 전환경로 등에 기초 한 저탄소 전환 동

현행	김소회의원안	수정의견(2026.3.)
<u><신설></u>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u>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u><신설></u> <u><신설></u>	<u>저탄소 전환 활동</u> <u>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u> 19. “금융회사”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 ----- ----- ----- <u>--기후금융 촉진에 필요한 재원</u>----- ----- ----- ----- ----- ----- -----. ② 공공기관은 <u>기후금융</u> 촉진 등을 위한 제1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u>제10장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u> 제74조의2(기본계획) ① 금융위원회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	<u>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u> 20. “금융회사”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 ----- ----- ----- <u>--녹색금융 및 전환금융의</u> 촉진에 필요한 재원----- ----- ----- ----- ----- ----- -----. ② (<u>현행과 같음</u>) <u>제9장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u> <u><삭제></u>

현행	김소회의원안	수정의견(2026.3.)
<신설>	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금융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기후금융 추진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 3. 기후금융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개선 4. 기후금융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기후금융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74조의3에 따른 기후금융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3(기후금융 추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삭제>

현행	김소회의원안	수정의견(2026.3.)
	<u>으로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u> <u>2. 기후금융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u> <u>3. 그 밖에 기후금융 촉진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촉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u> <u>③ 촉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u> <u>1.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u> <u>2. 기후금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u> <u>④ 위촉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u> <u>⑤ 위촉위원의 임기는</u>	

현행	김소회의원안	수정의견(2026.3.)
<신설>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u>촉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후금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내에 전담조직을 둔다.</u> ⑦ <u>그 밖에 촉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4조의4(공공금융지원)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u>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u>그 밖에 자금 공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u>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우선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다.</u>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제68조의2(공공금융지원)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u>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6. <u>그 밖에 자금 공급 또는 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u>

현행	김소회의원안	수정의견(2026.3.)
<신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그 밖에 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1항의 자금 공급 및 제2항의 보증을 위하여 해당 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자금 공급 및 제2항의 보증 실적은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에 가산 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금 공급 및 보증을 위하여 해당 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삭제>
	제74조의5(금융회사의 책무 등) ①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전략·목표·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과 관련된 내부 위원회 설립 및 운영, 전담 임원의 선정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을 주기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제68조의5(금융회사의 책무 등) ①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의 촉진을 위한 전략·목표·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과 관련된 내부 위원회 설립 및 운영, 전담 임원의 선정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을 주기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현행	김소회의원안	수정의견(2026.3.)
<신설>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는 <u>기후금융</u>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는 <u>녹색금융 및 전환금융</u>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4조의6(채권발행)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68조의3(녹색국채의 발행) ① 정부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부담으로 <u>녹색국채</u>를 발행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채권과 관련한 원칙을 제정 및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u>녹색국채</u>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④ 제1항의 채권은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및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③ 제1항에 따른 <u>녹색국채</u>는 그 발행 목적에 맞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발행 시 해당 용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u>녹색국채</u>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현행	김소회의원안	수정의견(2026.3.)
	<u>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조항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u>	<u>⑤ 녹색국채의 종류·이율, 발행의 방법과 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 및 이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u>제68조의4(녹색채권 발행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채권(제2조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자에게 이자 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신설>	<u>제74조의7(중소기업 녹색 전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녹색분류체계 적용 관련 특례를 부여하거나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u>	<u><삭제></u>
<신설>	<u>제74조의8(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금융위원회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기</u>	<u><삭제></u>

현행	김소회의원안	수정의견(2026.3.)
<신설>	<u>후금융</u> 촉진 지원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4조의9(국회 보고) 금융위원회는 제74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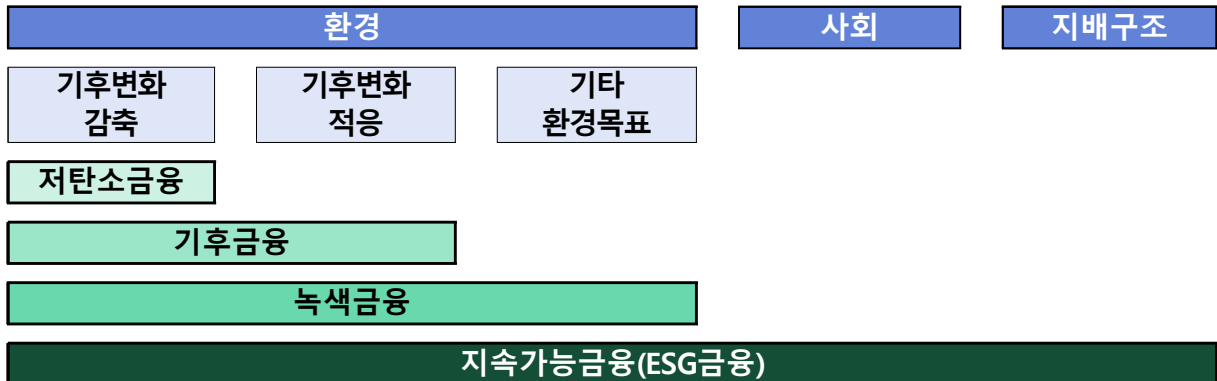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536

참고 1

녹색금융과 기후금융의 관계

<기후금융의 경제적 개념과 범위>



자료: UNEP(2023, 송홍선,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발전 과제'에서 재인용)

- (녹색금융) 합의된 정의·개념은 없고, 기후금융, 저탄소금융, 지속가능금융(ESG금융) 등 구분없이 사용
 - (주요 개념) ①목적(환경오염 최소화, 에너지·자원 효율화 등), ②투자대상(녹색활동·기술·산업 등), ③제외대상(환경파괴·훼손 등)
 - (금융권) 다양한 금융회사가 녹색산업·녹색성장 관련 기업, 자산 등에 투자·대출·보증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

* 은행연합회 등 5대 금융협회가 발간한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22.3.31)

⇒ 기후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로 녹색금융의 대상이 되는 녹색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 여신·채권 등 적용에서 금융위와 협업

	녹색금융	전환금융
대상	이미 친환경적인 경제활동 (녹색경제활동)	현재 배출이 많은 경제활동 (전환경제활동)
주요 지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부합성	온실가스 감축률 및 중장기 전환계획(탄소고착화 방지)
예시	재생e 생산, 폐열 인프라 구축, 물 재이용, 재생e 기반 수소환원제철	유연탄의 LNG 연료전환, 전기로 도입, 배출원 단위가 낮은 석유화학제품 생산

- (전환금융) 탄소 다배출 산업·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과도기적 지원의 일환으로 도입된 개념
 - 「전환금융 가이드라인(금융위·기후부·금감원, '26. 2.)」 발표로 구체화 되었고, 녹색분류체계와 전환전략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운영

참고 2

한국형 녹색채권 관련 자료(출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1. 한국형 녹색채권 현황

구분	내용
누적 발행기관	총 137개
누적 발행금액	43,609,849백만원
- 상환액	14,999,000백만원
- 상장잔액	28,610,849백만원
누적 발행종목수	487개
- 상환종목수	159개
- 상장종목수	328개
평균표면이자율	3.114%

2.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절차



참고 3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개요

□ 추진배경

-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한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하여 탄소중립 적기 추진에 기여

□ 지원사업 개요

- (목적)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여 탄소중립 적기 추진에 기여
- (예산규모) ('26년) 8,100백만원 ※전액 이차보전
- (지원대상) 사업 공모 후 선정된 기업 중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관
 - (선발방식) 최저요건을 갖춘 기업이 녹색분류체계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경제활동으로 신청하면 부문별 선착순(녹색 부문 및 중소·중견기업 우선)
- (지원방식) 참여기업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기업규모별 차등지원*
 - * 최대 3억원까지 이차보전, (대·공기업) 0.2%p / (중소·중견기업) 1.0%p

<사업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지원사업 공고	기술원	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 대상 사업 공고
↓		
② 참여기업 선정	기술원	선착순을 대원칙으로 녹색/전환부문별 참여기업 선정
↓		
③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기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녹색경제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		
④ 지원금 지급	기술원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이차비용 지원금 지급

□ 추진 성과

- 2023년 25개사가 4조 6,339억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 2024년 27개사가 5조 1,662억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 2025년 37개사가 5조 2,697억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